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항공안전기술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 내용으로 명시(안 제6조제5호 신설).
- 항공안전기술원의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등 신설).

II. 검토의견

□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위탁사업 규정(안 제6조제5호)

안 제6조제5호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 범위에 「항공사업법」 제75조제5항¹⁾에 따라 위탁받은 같은 법 제69조의2²⁾에 따른 무인항공 분

1) 「항공사업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생략)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법 제69조의2 각 호의 업무를 「항

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런데, 정부출연기관 등 특수법인의 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는 해당 특수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하나, i)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업무는 당초 위탁기관의 사무이지 해당 특수법인의 고유한 업무가 아니어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개별적인 업무를 특수법인의 사업 범위에 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법제라는 점과, ii)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추상적 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법제로서, 현행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제5호³⁾에서도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은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항공안전기술원의 사업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수탁사무에 대한 현행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항공안전기술

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2) 「**항공사업법**」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수리·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9. (생략)

3) 「**항공안전기술원법**」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감항성개선훈령 등의 명령을 위한 항공기 구조상 결함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및 지원
2. 「항공안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108조제1항, 제124조 및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증명, 승인,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
3. 항공기 등에 대한 국가공인 비행시험과 국가공인 비행시험 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항공사고 예방기술 개발 및 항공안전 국제표준화 기술연구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항공안전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이 수행하게 될 사업 범위를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기술연구 및 지원 관련 사업으로 수정하되, 그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수탁 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수정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사업)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사업) ----- ----- -----.
1. ~ 4. (생략)	1. ~ 4. (생략)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u>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u>	5. ----- ----- ----- <u>사업의 기술연구 및 지원과 관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
6. · 7. (생략)	6. · 7. (제정안과 같음)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정희)